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1 - 65
----------	-----------

제출연월일	2011. 10. 06.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군의회의 주문사항과 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요건을 완화하고, 환경부 고시 개정내용에 적합하게 보상금 지급기준을 조정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군민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로 함

나. 피해농업인의 용어 개정(안 제2조제5호)

- 피해농업인을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민”에서
⇒ “군 내에서 피해농작물을 직접 경작·재배한 농업인”으로 변경
- ※ 도 권고사항 반영

다. 농작물·인명피해 보상요건을 통합하고 완화함(안 제3조)

- 피해 보상요건을 완화함
 - 최저 피해면적 기준 : 330제곱미터 이상 ⇒ 삭제
 - 최저 피해금액 기준 : 30만원 이상 ⇒ 삭제
- ※ 군의회 주문사항 반영 및 도 권고사항 반영

라. 보상금 지급기준을 조정함(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 안 제9조제4항)

- 농작물 피해 : 최대 500만원
- 피해보상액 산정 곤란시 피해보상액 조정
- 인명 피해 : 최대 50만원

마.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1-41호, 2011.4.4시행)의 개정 내용 중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고시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되는 조항을 삭제함

- 피해보상대상 제외 규정을 삭제함(현행조례 제8조, 제12조)
-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조항을 삭제함
(현행조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 바. 별지서식에 근거 조례명 및 용어 순화, 구비서류 등 수정함**
(안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 「민법」 제779조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11-41호)
-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시행규칙」 [별표]

나. 예산조치 : 2011년도 예산확보

- 농작물피해 보상예산 : 49백만원
- 인명피해 보상예산 : 6백만원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입법예고(2011. 8. 1 ~ 8. 21) : 특기사항 없음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 및 농작물피해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포유류, 야생조수, 독사류 등을 말한다.
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을 말한다.
3. “농작물피해”란 농업인이 직접 재배·경작하는 농작물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4. “인명피해”란 농업인이 군 내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재배하는 중에 야생동물로 인하여 직접 신체상의 피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5. “피해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발생일 기준 군 내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재배하는 중에 농작물 및 인명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인명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피해보상 청구를 한 피해농업인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농작물피해 보상

제4조(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이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된 피해면적에 피해율과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 가격의 100분의70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농작물의 피해면적은 실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제5조(피해보상액 산정) ① 피해보상액은 피해농업인에게 최대 500만원이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되, 동일 경작지에 대한 지급금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피해보상액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작물별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범위 초과, 중복지원 등으로 피해보상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액을 조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농업인은 농작물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농작물피해 발생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장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고 접수 후 농작물피해 현장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농업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작물피해 사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보상 절차) ①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밀조사결과를 토대로 피해보상액을 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피해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피해농업인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금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피해농업인에게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급하여야 하는 피해보상금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순서에 따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2. 장애인
3. 70세 이상 노인
4. 그 밖에 영세농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장 인명피해 보상

제8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농업인 또는 그 가족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고 접수 후 피해마을 이장과 피해농업인이나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다. 이하 같다) 입회하에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액 산정 및 지급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인명피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을 말한다.
 ② 피해지원금은 직접 피해농업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피해농업인이 사망하였거나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
 ③ 피해농업인이나 그 가족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인명피해 지원금청구서를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④ 야생동물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시 지원금은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발생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발생신고서가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된 조례를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발생신고서				
피해농업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자 택 : 휴대폰 :		
피해현황	피해지역	거창군	읍(면)	리 번지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기간	~ (일간)		
	경작지면적	m ²	피해면적	m ²
<p style="text-align: center;">「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 (서명 또는 인)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읍·면장 귀하</p>				
구비서류 1. 토지대장, 지적도면 1부 2. 임대차 계약서 등 권리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3. 피해사실 입증 사진 1부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정밀조사서													
피해농업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피해정밀 조사결과	조사일시	년 월 일 시											
	피해지역	거창군 읍(면) 리 번지 (지목 : , 지적 m ²)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경작지면적	m ²	피해면적	m ²									
	기 타												
<p>「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농작물 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30%;">조사공무원 직</td> <td style="width: 20%;">성명</td> <td style="width: 50%;">(서명 또는 인)</td> </tr> <tr> <td>피해 농업인</td> <td>성명</td> <td>(서명 또는 인)</td> </tr> <tr> <td>읍·면 공무원 직</td> <td>성명</td> <td>(서명 또는 인)</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거창군수 귀하</p>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 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 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 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 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p>조사방법</p> <p>1. 피해면적 산정</p> <p>가. 과수분야 : 표준재식면적(m²) × 피해주수</p> <p>나. 과수제외한 전 작물 : 가로 × 세로</p> <p>2. 현장사진 첨부</p>													

[별지 제3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결정통지서				
피해농업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피해현황	피해지역	거창군	읍(면)	리 번지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경작지면적	m^2	피해면적	m^2
보 상 금 액		₩		
<p>「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 피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 margin-top: 20px;">거 창 군 수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귀하</p>				

[별지 제5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신고서			
신고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피 해 발 생 상 황	피해지역	거창군	읍(면) 리 번지
	피해발생 일 시		
	가해야생 동 물		
	피해내용 (발생경위)		
	피해신고 금 액	계	내 용
	원	○치료비 : ○ ○	
<p>「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명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left;">거창군수 귀하</p>			
구비서류 : 피해근거서류(현장사진, 진단서 등)1부			수수료
			없 음

[별지 제6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지원금청구서				
피해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구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해자와의 관계			
보상금액		원		
계좌번호				
<p>「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제9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명피해 지원금을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자 (서명 또는 인)</p> <p>거창군수 귀하</p>				
구비서류 : 영수증 각 1부				